

자치분권2.0 시대,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



주민주권 구현 ①

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됩니다.



· 주민자치 원리 강화 (제1조)

목적 규정에 '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' 명시

· 주민의 권리 확대 (제17조)

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

·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(제19조)

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·개폐 청구가 가능

*주민조례 발안법이 별도 제정될 예정

주민주권 구현 ②



- **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(제21조)**
주민조례발안, 감사청구 등에 참여
할 수 있는 연령 하향
(19세 이상→18세 이상)

시·도
300명



대도시
200명



그 외
시·군·구
150명



- **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(제21조)**
시·도 300명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
는 200명, 그 밖의 시·군·구는 150명
이상의 주민동의로 주민감사와 소송
제기 가능

지방의회 독립성 확보

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.



·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(제41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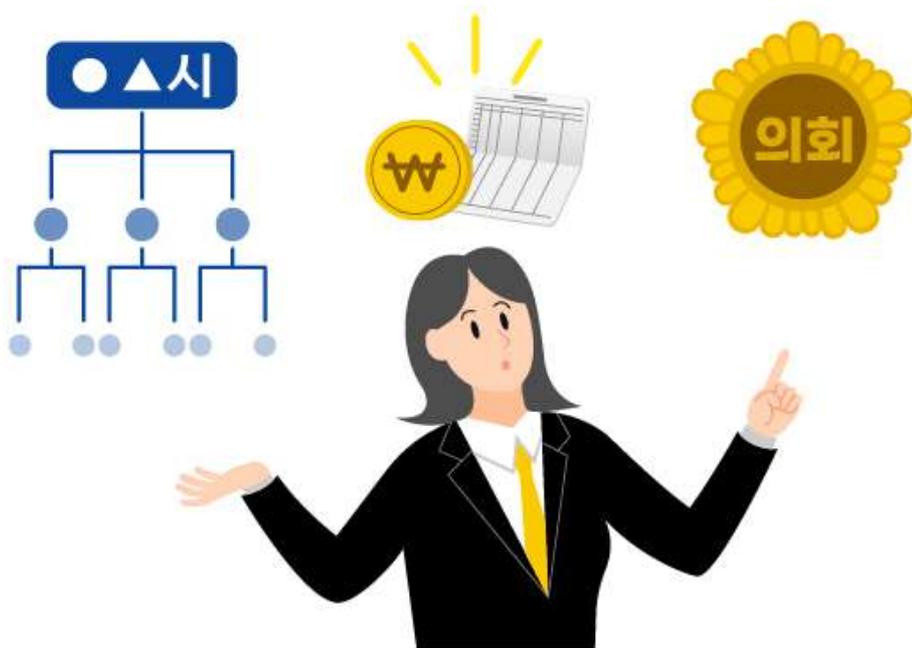
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/2범위
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
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
(*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)

·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(제103조)

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
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

지방의회 책임성 강화

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.



·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(제26조)

의회의 의정활동, 집행부 조직·재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해야 하는 일반 규정이 신설

· 지방의원 겸직금지 (제43조)

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되며 겸직 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

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①

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
지방행정의 역량을 강화합니다.



기관구성 다양화

·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(제4조)

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
의 구성 형태 변경이 가능

*추후 별도법 제정 추진



100만명 이상

특례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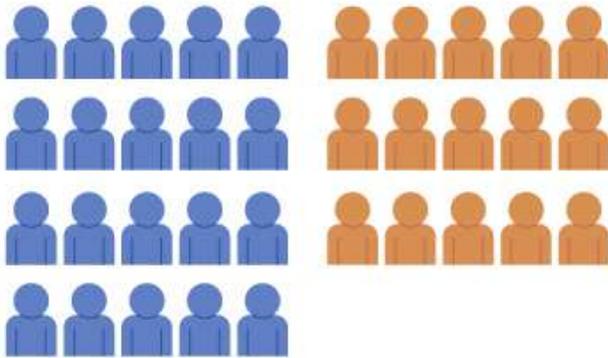
·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(제198조)

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하고,
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
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·군·구에
특례 부여 가능

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②



단체장 인수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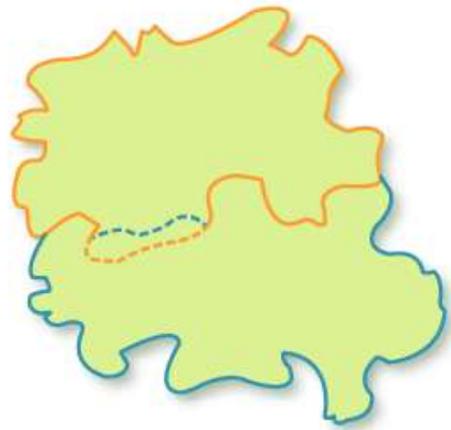


광역지자체 - 20인

기초지자체 - 15인

- **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(제105호)**
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 교체될 경우 광역지자체는 20인 이내, 기초지자체는 15인 이내로 인수위원회 구성 가능

경계조정 절차 진행



자율협의체를 통한 경계조정협의 추진

- **경계조정 절차 신설 (제6조)**
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협의를 추진하며, 미해결 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가능

자치권 확대

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확대되어
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.

자치권 보장



· 사무배분 보충성의 원칙 규정 (제11조)

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

·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(제28조)

법령의 범위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,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명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내용과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

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

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활성화됩니다.



· 국가-지방간 협력 의무 (제164조)

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,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-자치단체, 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를 신설

·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(제186조)

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주요 정책, 지방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 및 협의회가 가능한 근거 마련

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



- **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·운영 규정 마련 (제12장)**
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

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
지방중심의 대전환을
본격 시작하겠습니다.

